의 견 서

사 건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000 외 3

2022. 6. 8.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지연

헌법재판소 귀중

< 목 차 >

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 1

1. 검열의 의미와 요건 ····· 2

가. 검열의 주체로서 행정권 ····· 2

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 ····· 3

다.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 3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 3

마. 소결 ····· 4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4

Ⅱ. 본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 7

1. 포괄위임금지원칙 ····· 7

가. 조치의무사업자 부분 ····· 7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부분 ····· 8

2. 명확성 원칙 ····· 10

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 10

3. 기본권의 침해 ····· 13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 13

(1) 목적의 정당성 ····· 13

(2) 수단의 적합성 ····· 13

4. 정보매개자 책임 법리와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 ····· 15

Ⅲ. 적법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 16

1. 자기관련성 ····· 16

가. 이해관계인이 적시한 선례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차이점 ····· 16

나.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이 사건 청구인 ····· 18

2. 직접성 ····· 20

3. 현재성 ····· 22

Ⅳ. 결론 ····· 22

의 견 서

사 건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000 외 3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이해관계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조항 (제22조의3 제1항)[1]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조항 (제17조 제1항)[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3]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545
2)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3)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30면

1. 검열의 의미와 요건

헌법재판소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4]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 합니다.[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헌법에 위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2항 제3호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가. 검열의 주체로서 행정권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며,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

4)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5)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6]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검열의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하여 검열의 주체가 행정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식별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해당합니다.

다.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는 정보를 게재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되어 조회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에 해당합니다.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조치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7]에 처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8]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의 등록취소 및

---

6)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폐업명령[9]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에 대한 금지가 행정명령·과태료·형벌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합니다.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종의 '업로드 필터', 즉 표현물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전에 소위 '불법표현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1년, 2012년 이미 SABAM v. Netlog NV[10] 사건과 Scarlet Extended SA v. SABAM[11] 사건을 통해 '업로드 필터'와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SABAM v. Netlog NV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필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스템 공급업체의 기업가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송수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데, 특히 기술이 아직 합법적인 콘텐츠와 불법적인 콘텐츠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없고, 따라서 합법적인 정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찾기 위해 특별한 의심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대량으로 스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12][13] 이 사건 심판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10) Case C-360/10, 2012. 2. 16

11) Case C-70/10, 2011. 11. 24

대상조항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특별한 의심의 사유가 없이 조치의무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를 대량으로 스캔하는 것으로서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위헌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이후 2019년 유럽연합은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을 통해 저작권침해물을 포착하여 제거할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제17조)[14]. 이에 대해 많은 단체가 **사전검열 내지는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저작권지침 조항은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15]

12) Amélie Heldt, "Zensur durch Upload-Filter: Zur umstrittenen EU-Reform des Urheberrechts", 2018.6.25., "https://verfassungsblog.de/zensur-durch-upload-filter-zur-umstrittenen-eu-reform-des-urheberrechts/

13) Llansó, E. J. (2020). No amount of "AI" in content moderation will solve filtering's prior-restraint problem. Big Data & Society. https://doi.org/10.1177/2053951720920686

14) Article 17 Use of protected content by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4. If no authorisation is granted,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shall be liable for unauthorised acts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cluding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copyright-protected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unless the service providers demonstrate that they have:
(a) made best efforts to obtain an authorisation, and
(b) made, in accordance with high industry standards of professional diligence, best efforts to ensure the unavailability of specific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for which the rightholders have provided the service providers with the relevant and necessary information; and in any event
(c) acted expeditiously, upon receiving a sufficiently substantiated notice from the rightholders, to disable access to, or to remove from their websites, the notified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nd made best efforts to prevent their future uploads in accordance with point (b).

15) Article 17 Use of protected content by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7. The cooperation between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and rightholders shall not result in the prevention of the availability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uploaded by users, which do not infring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cluding where such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are covered by an exception or limitation.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users in each Member State are able to rely on any of the following existing exceptions or limitations when uploading and making available content generated by users on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s:
(a) quotation, criticism, review;
(b) use for the purpose of caricature, parody or pastiche.
8.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shall not lead to any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provide rightholders, at their request, with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unctioning of their practices with regard to the coope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and, where licensing

을 포함한 연후에야 통과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폴란드 정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역시 해당 조항이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헌임을 선언하였습니다.[16)17)]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바로 유럽사법재판소가 위헌임을 천명한, **업로드되는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agreements are concluded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rightholders, information on the use of content covered by the agreements.

9.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put in place an effective and expeditious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that is available to users of their services in the event of disputes over the disabling of access to, or the removal of,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uploaded by them.

Where rightholders request to have access to their specific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disabled or to have those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 removed, they shall duly justify the reasons for their requests. Complaints submitted under the mechanism provided for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be processed without undue delay, and decisions to disable access to or remove uploaded content shall be subject to human review. Member States shall also ensure that out-of-court redress mechanisms are availabl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Such mechanisms shall enable disputes to be settled impartially and shall not deprive the user of the legal protection afforded by 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users to have recourse to efficient judicial remedies. In particular,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users have access to a court or another relevant judicial authority to assert the use of an exception or limitation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is Directive shall in no way affect legitimate uses, such as uses under exceptions or limitations provided for in Union law, and shall not lead to any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users nor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xcept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2002/58/EC and Regulation (EU) 2016/679.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shall inform their users in their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y can use works and other subject matter under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vided for in Union law.

16)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Case C-401/19 Republic of Poland v.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ECLI:EU:C:2022:297.

17) Euractiv, EU top court upholds Copyright Directive's "upload filter" provision with caveats, 2022.4.26.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eu-top-court-upholds-copyright-directives-upload-filter-provision-with-caveats/

II. 본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포괄위임금지원칙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중 ① 조치의무사업자 부분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기 용이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18], ②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에 관한 부분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하위법령에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입 취지 및 관련 조항에 비추어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19]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조치의무사업자 부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3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런데 동 조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와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에 상세히 주장한 바, 그 이후 발생한 사정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

18)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21면
19)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9면 내지 20면
20)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28면 내지 34면

2020. 5. 이해관계인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안)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대상사업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21]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입법의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수범자와 구성요건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낮은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해관계인 역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어 실제로 2021. 12. 경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던 에펨코리아가 3개월 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22]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부분

이해관계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는 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3]을 인용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기술적·관리적 조

21) 방송통신위원회 2020. 5. 15.자 설명자료 6면
22) 2022. 3. 10.자 디지털데일리 기사

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4]

그러나 위 사건에서 문제된 기술적 조치의 경우 ㉠이용자가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에게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접수조치')와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인식목적 기술적 조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이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①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5], ②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26], ③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27], ④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28]를 모두 의미합니다.

---

23)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24)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25 내지 26면
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1호
2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4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은 그 구체적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여 한 차례 더 고시에 위임[29]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는 모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명확성 원칙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등" 부분과,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30]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등"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31]에 상세히 주장한 바,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법률의 개정 이후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는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설명자료를 발표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텔레그램, 카카오톡, LINE 등 개별 서비스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3항
30)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26면 내지 29면
3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36면 내지 38면

보다 자세히 살피면, 이해관계인은 2020. 5. 15.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2]고 설명하였고, 2020. 5. 21.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33]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2021. 12. 13.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34]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공개 게시판 등에만 적용되므로, 카카오톡·LINE과 같은 대화방은 제외되며,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35]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범자로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직후, 수많은 문제 제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은 이메일, 블로그, 메신저, 게시판, 카페, 오픈채팅 등으로 다양하고 각 서비스마다 공개수위도 천차만별인 만큼[36]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해관계인의 설명자료를 감안하더라도 명확한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회원

32)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 2020. 5. 15. 1면
33)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 2020. 5. 21. 2면
34)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1면
3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6면
36) 2020. 7. 23.자 아시아경제 기사

등급, 초대, 비밀번호 등으로 일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LINE과 같은 대화방은 제외”된다는 이해관계인의 해석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극히 일부의 서비스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에 그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설명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37] 이라는 이해관계인의 보도설명자료 내용과 달리, 텔레그램의 ‘그룹’ 서비스는 최대 200,000명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그룹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관계인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텔레그램을 통해 자행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단의 오류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준이 더욱 문제 됩니다.

법 개정 이후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과 6개월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2. 6. 9.부터는 메타의 페이스북, 알파벳의 구글 등 방대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조치의무가 강제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입니다.

3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1면
38) 텔레그램 자주묻는질문

3. 기본권의 침해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39]를 통해 이미 상세히 주장한 바, 그 이후 발생한 사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1) 목적의 정당성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이라면 이의 정당함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2) 수단의 적합성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n번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도입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텔레그램 등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5. 7. 제37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규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실효

39)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41면 내지 47면

성 문제는 개정 전부터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40]

이해관계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 5. 15.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41]라고 설명하여 규제집행력의 문제로 이를 해석하는 듯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 12. 13.에 이르러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42]이라고 설명하여 결국 n번방 범죄와 같은 형태의 범죄의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함을 인정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43]이라는 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실효성의 문제[44]와 역차별을 낳는다는 비판[45][46]을 면치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진 **해외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더욱 깊은 음지에서 유포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인은 2020. 5. 15.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디지털성범죄물의 **초기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가**(“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

40) 2020. 5. 7. 제377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 회의 회의록 제15면 내지 16면
41)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 2020. 5. 15. 제5면
4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제1면
4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제1면
44) 2021. 12. 12.자 한국일보 기사
45) 2021. 12. 13.자 중앙일보 기사
46) 2020. 5. 21.자 조선일보 기사

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 2021. 12. 13.에 이르러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최초 제작·유포 등을 못 잡아낸다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동 조치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 정보가 아닌 **불법촬영물 최초 유포 등의 경우 동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님**”, “n번방 방지법 등에 따라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 및 경찰의 잠입수사(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47] 이라는 답변을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4. 정보매개자 책임 법리와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

이해관계인은 청구인들의 정보매개자 책임 법리와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에 관한 주장[48]에 관하여 어떠한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1. 12. 13. 제7면
48)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14면 내지 28면

Ⅲ. 적법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자기관련성

이해관계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49]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합니다.

가. 이해관계인이 적시한 선례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차이점

이해관계인이 적용되어야 할 선례로 언급[50]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51]의 경우 심판대상은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권고조항[52]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권고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권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49)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7면
50)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2면
51) 헌법재판소 2012. 8. 14. 선고 2012헌마624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권고를 내용으로 했던 해당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조치의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제한과 금지가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는 훨씬 중하므로 이해관계인이 언급한 선례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선례로 언급한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두 번째 선례로 언급한[53]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54]의 경우 청구인들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결과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55]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로 인하여 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메타, 구글 등 90여 개의 조치의무자들이 제공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현대인들의 삶에 깊게 스며들어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53)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3면
54) 헌법재판소 2020. 5. 26. 선고 2020헌마661
55)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정도가 훨씬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인터넷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콘텐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진지성의 정도 역시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법 개정 이후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과 6개월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2. 6. 9. 부터는 메타의 페이스북, 알파벳의 구글 등 해외 기업들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바,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500시간의 비디오, 또는 하루에 720,000시간의 비디오가 업로드[56]되는 구글의 유튜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러한 방대한 양의 표현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필터링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그 진지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습니다.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설립목적은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이 사건 청구인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57]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게시판

56) L. Ceci, (2022). Hours of video uploaded to YouTube every minute 2007-2020.
57)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이용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 이용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되어 조회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58]에서 청구인과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파일 전송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59], 합법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려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콘텐츠가 대조되어 조회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이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선례로 언급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려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60]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져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검색결과가 삭제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이 제한되어 걸러진 정보에 대한 접근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고인들은 사전심의제도의 규율을 받는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5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
59) 2021. 12. 10.자 뉴스1 기사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그 제작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와 **심의기준의 존재를 의식하여 제작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만약 사전심의의 결과 방송불가 또는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광고표현물을 심의기준에 맞게 재수정해야 하는 등의 직접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준을 규정한 법령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6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설령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들이 이 사건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존재를 의식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일반법률의 해석이나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헌법해석기관이며, 헌법소원의 기능이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62]는 점에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직접성

이해관계인은 "청구인들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검색제한조치와 필터링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검색결과에 대한 접근 또는 정보의 게재가 제한된 때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조치의무사업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63]고 하여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61)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4헌마207
62)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63)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12면 내지 13면

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변제 보증금 액수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규정들이 그 형식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액수를 객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라는 재산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율·제약하는 규정이라고 보이고 반드시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64]라고 판시하면서, 법규명령의 직접성 요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그들이 취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제약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설령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따라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65]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검색결과 송출이 제한된 정보에 대하여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에 정보를 게재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되는 사전조치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

64)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65)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마48

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다는 이해관계인에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43면 내지 45면에 해당 내용이 위치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성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침해가 있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고 현실적인 침해를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그 구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다”[6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이 2021년 12월로 예정되어있어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어 더이상 현재성의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심판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6)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 2020. 5. 15.자 설명자료
1. 참고자료 2　2022. 3. 10.자 디지털데일리 기사
1. 참고자료 3　방송통신위원회 2020. 5. 21.자 설명자료
1. 참고자료 4　방송통신위원회 2021. 12. 13.자 보도설명자료
1. 참고자료 5　2020. 7. 23.자 아시아경제 기사
1. 참고자료 6　텔레그램 자주 묻는 질문
1. 참고자료 7　2020. 5. 7. 제377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제1차 회의 회의록
1. 참고자료 8　2021. 12. 12.자 한국일보 기사
1. 참고자료 9　2021. 12. 13.자 중앙일보 기사
1. 참고자료 10　2020. 5. 21.자 조선일보 기사
1. 참고자료 11　2021. 12. 10.자 뉴스1 기사

2022. 6. 8.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 지 연

헌법재판소 귀중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5월 15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20. 5. 15.(금)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김영주 팀 장(☎2110-1560)
강윤진 사무관(☎2110-1549)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1부. 끝.

붙 임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1. 통과된 법문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예: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전문가 및 언론 등에서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동 조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 및 통신비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보완사항을 검토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등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할 예정

o 아울러, 방통위는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등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n번방 사건’은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사업자의 메신저, SNS 서비스 등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에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공개된 바 없으며,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쉽지 않아 사실상 법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학계와 언론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이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실태조사, 투명성보고서 발행, 사업의 정지 및 폐기 등 각종 의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궁금합니다.

4. 앞선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촬영물을 등 불법정보 차단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에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궁금합니다.

o 그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해외사업자에도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19.6.25. 시행)되었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19.3.19. 시행)가 신설되었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역외적용 규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o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o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개정안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자들이 규제가 강화된 인터넷서비스 대신 대포폰 등을 통해 공범자를 모으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기능과 성격을 갖는 기간통신사업자의 SMS, LMS 등 문자서비스의 경우에도 같은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o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이에 따르면, 사인 간 주고받는 문자서비스 역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o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포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하였으므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통과된 법안에 따른 규제대상 사업자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안)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대상사업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방통위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o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치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IT언론의 새로운 대안
디지털데일리

[단독] 'n번방 막겠다'더니… 방통위, 카톡 이어 커뮤니티 검열 구설수

기사입력 2022.03.10 20:44:35 | 최종수정 2022.03.10 20:44:35 | 이종현 | bell@ddaily.co.kr

공지 ☆ | 알림

포텐 오늘 에펨코리아 전체 움짤을 기술적으로 강제 검열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시스템모니터 조회 수 333829

https://www.fmk

안녕하세요,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오늘 에펨코리아 전체 움짤을 기술적으로 강제 검열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짤방(움짤)'을 강제 검열하도록 조치했다. 검열을 위해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채 일방적 통보를 해 탁상 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10일 국내 인기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의 관리자가 방통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공지했다. 오는 6월 9일까지 사이트 내 전체 움짤을 기술적으로 강제 검열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작년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적 조치란 정부가 제공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는 소프트웨어(SW)와 불법촬영물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업로드되는 이미지·영상 등에 필터링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에펨코리아 관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위해서는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장비는 전기 소모량도 많아 비용과 무관하게 호스팅 업체에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자의 경우 해당 장비 도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서버 주문도 불가능할 듯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를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병렬 컴퓨팅 플랫폼 쿠다(CUDA)를 지원하는 GPU가 필수이며, 권장 사양이 듀얼 중앙처리장치(CPU)에 128기가바이트(GB) 이상 메모리, 16~26GB 이상 x 2 GPU 메모리, GPU 파워 250~300와트(W), 1000W 파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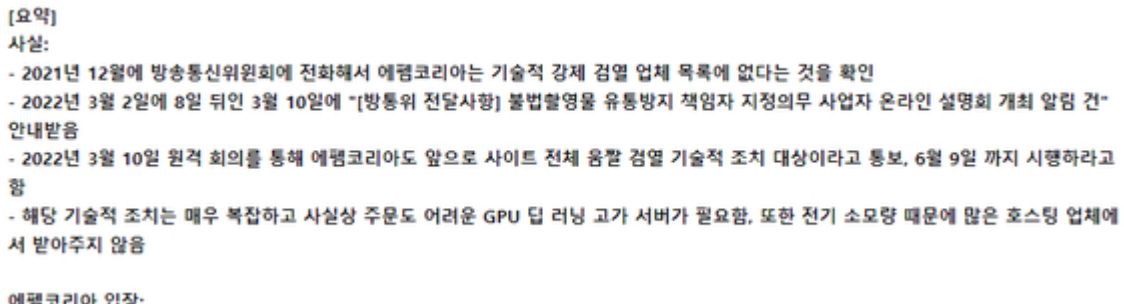
[요약]
사실:
- 2021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해서 에펨코리아는 기술적 강제 검열 업체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
- 2022년 3월 2일에 8일 뒤인 3월 10일에 "[방통위 전달사항]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건" 안내받음
- 2022년 3월 10일 원격 회의를 통해 에펨코리아도 앞으로 사이트 전체 움짤 검열 기술적 조치 대상이라고 통보, 6월 9일 까지 시행하라고 함
- 해당 기술적 조치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상 주문도 어려운 GPU 딥 러닝 고가 서버가 필요함, 또한 전기 소모량 때문에 많은 호스팅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음

에펨코리아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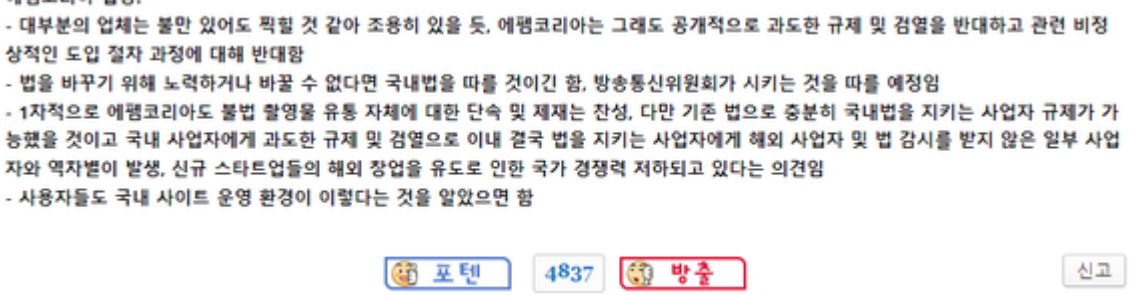

문제는 이와 같은 방통위의 지침이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데 더해, 그 부담을 온전히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12월, 에펨코리아는 방통위에 연락해 기술적 강제 검열 업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에펨코리아는 방통위로부터 3월 2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를 받고, 10일 원격회의에서 에펨코리아도 기술적 조치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

에펨코리아 관리자는 “국내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트위터와 경쟁할 만한 사이트 운영은 불가능하다. 트위터는 국내 영장을 무시하면서 자발적인 자체 기준에 따라 검열을 하더라도 강제검열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국내 사이트가 자율점검에 더해 강제로 많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해외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창업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 방통위가 시키는 것을 따를 예정”이라며 “사용자들도 국내 사이트 운영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오후 5시 29분 업로드된 해당 공지사항은 3시간 만에 조회수 33만, 추천 4812, 댓글 1827개가 달리며 높은 관심을 얻었다. 방통위의 조치를 비판하는 의견 일색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로 판정한 영상물인지 여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번에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경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준비 상황을 따로 챙겨보고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장비 수급의 어려움 등은 정책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보다 앞서 작년 12월 10일 ‘카카오톡 검열’ 논란도 일었다. 방통위는 당시도 적극적으로 ‘검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많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해당 논란으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겠다는 이용자를 늘렸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트위터 관계자는 커뮤니티 관리자의 증언에 관련 “트위터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위한 전담 연락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요청된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 운영원칙에 따라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한 계정을 금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현 (bell@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닫기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5월 21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20. 5. 21.(목)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김영주 팀 장(☎2110-1560)
강윤진 사무관(☎2110-1549)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과 시행령 준비작업 착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5월 20일(수)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o 또한,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22일(금)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방통위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또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2월 13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21. 12. 13.(월)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김미정 팀 장(☎2110-1560)
허성회 사무관(☎2110-1549)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20.4월)

□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함

□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1.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추진배경

□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고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및 관련 법 개정('20. 4월~5월)

o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11개부처 합동으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20.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주요내용

◦ (**처벌강화**) 제작·판매·광고행위 처벌 강화, 양형기준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 (**아동·청소년보호**) 온라인그루밍,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신설, **잠입수사 도입 및 랜덤채팅앱 집중단속,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피해자보호**) **인터넷사업자의 사전기술조치 의무부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 피해자 24시간 종합지원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o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마련('20.4월~5월)

o 특히,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인터넷의 특성상, 재유통 방지를 위해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2.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주요 내용

□ 웹하드사업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기술적·관리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①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②불법촬영물등 검색 결과 송출제한
③이용자 게재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④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원문 : 붙임 참조

o ③불법촬영물 비교·식별(이하 '필터링') 시에는 **▲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뿐만 아니라 **▲ 민간에서 개발한 자체기술**(TTA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도 사용 가능

- 국가기술은 과기정통부 R&D 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DB를 구축,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원본 형태 아님)

※ 불법촬영물 원본 및 복제물 동영상은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소지, 저장 등이 금지되므로 방심위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를 원본 영상형태로 배포하지 않고 디지털 특징정보화하여 배포함**

-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 특징정보코드가 방심위 불법촬영물 특징정보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체크

o 방통위는 ETRI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DB를 무료로 제공('21.8월)하고, TTA는 민간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무료로 실시('21.8월~)

〈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개요 〉

o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이란, ① **방심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등 디지털특징정보 DB와** ② 게시판 등 공개서비스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디지털 특징정보***(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디지털 특징정보로 치환)를 비교하여 ③**일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 게재를 **제한**

* 특징정보 :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 (**불법촬영물 원본 및 복제물 동영상은**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소지, 저장 등이 금지되므로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를 원본 영상형태로 배포하지 않고 디지털특징정보화하여 배포함)**

- 사업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 및 비교·식별기술(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를 거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선택

특징정보 필터링 작동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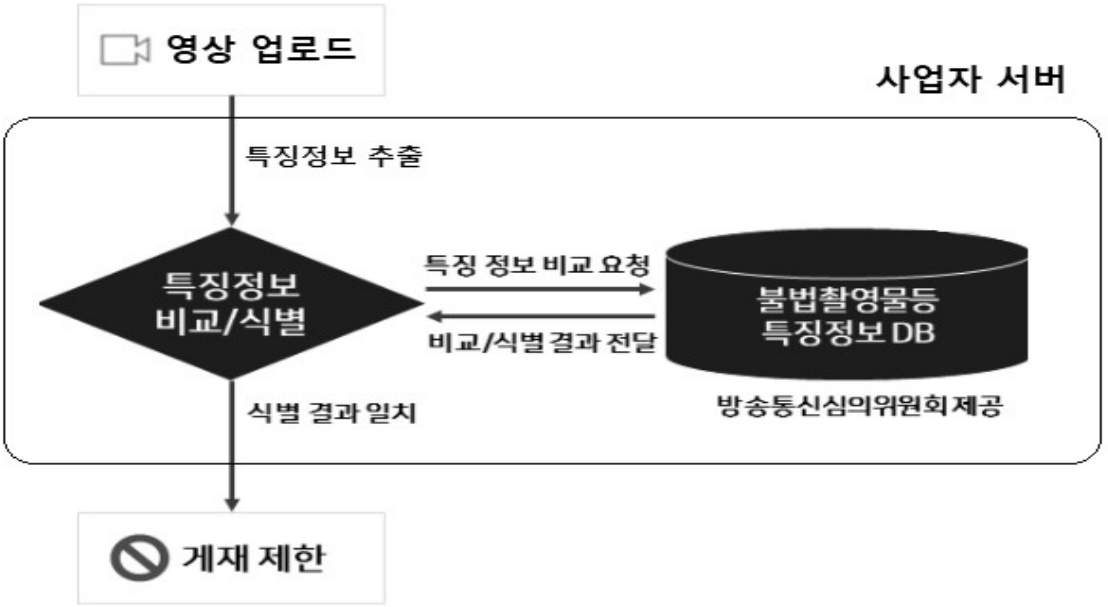

3. 기술적 · 관리적 조치 관련 팩트체킹

1 동 조치는 '검열'에 해당되는지?

o **검열과는 무관함**

o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

- 즉, ① 행정권이 검열의 주체가 되어 ② 표현물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③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여야 함

o **정부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만 할 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5항),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님**

o 비교 식별 기술은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임. **내용을 사전 심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님**

o 참고로, 인터넷사업자의 **사적 검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됨**

※ 개인간의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 등)은 해당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동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o 감청과는 무관함

o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감청'은 송·수신 중인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지득)하거나 녹취(채록)하는 것*을 말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o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은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감청이 아님**

3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 대상에서 빠졌음. 해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o 해외사업자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은 들여다 볼 수 없음

- 카카오톡 사적 대화방이 법적용 대상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사적 대화방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o 공개 게시판 등에만 적용되므로, 카카오톡·LINE과 같은 대화방은 제외되며,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④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최초 제작·유포 등을 못 잡아낸다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실효성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하나?

o 동 조치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 정보가 아닌 불법촬영물 최초 유포 등의 경우 동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님

o n번방 방지법 등에 따라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 및 경찰의 잠입수사**(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경찰 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대상은?

o 공개된 게시판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게시판, 그룹오픈채팅방** 등 **공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됨

o 동 조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 (1:1톡, 단체톡, 1:1 오픈채팅방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일반 영상도 불법촬영물로 차단되었는지?

o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o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영상(or 사진)은 차단된 바 없음

7 일부 언론에서 사례로 든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용제한 당했다'는 사례가 실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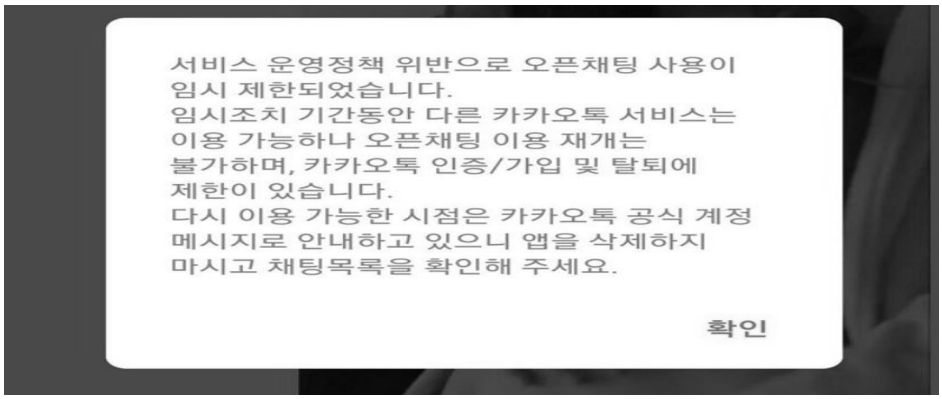

※ 애니메이션, 게임캐릭터 프로필사진 게재이후 불법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과, 불법촬영물 테스트를 위해 여성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이 다수 언론에 인용됨

o **사실이 아님**

o 커뮤니티 및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촬영물 필터링과는 무관함

8 일부 커뮤니티에서 AI 오인식 등 AI(인공지능) 필터링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o AI 필터링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동 필터링기술은 AI 필터링기술이 아니므로 잘못된 학습과 AI 오인식 등 AI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필터링기술은 업로드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정보와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의 일치여부를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AI 기반이 아님

붙임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3의4. (생략)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모호'..."디테일에 악마 없어야"

기사입력 2020.07.23 08:48 최종수정 2020.07.23 08:48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서비스 불분명

성능평가 세부기준 공개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능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는 '디테일의 악마'를 걱정하고 있다. 하위 고시와 법령 해설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각론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단속 대상 서비스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은 메일, 블로그, 메신저, 게시판, 카페, 오픈채팅 등으로 다양하고, 각 서비스마다 공개수위도 천차만별이다.

이 중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 되는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등업(등급 상향), 초대, 비밀번호 입력으로 일부만 참여할 수 있게 운영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도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이 서비스가 단속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방통위는 전일(22일)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술적・관리적 조치인데 구체적으로 ▲상시적 신고 기능 마련, ▲금칙어 등 검색 결과 제한 조치, ▲필터링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것은, 입법 초기 문제가 됐던 이용자 사생활 보호, 사적검열 논란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음 고시에서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정해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대상 서비스가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검색제한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평가'의 세부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행령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하고, 필터링 조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불명확하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평가의 대략적인 기준이나 공개 일정이라도 나와야 여기에 맞춰 필터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하위 고시와 법령 해설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그룹과 채널

텔레그램 그룹이 멋진 이유가 뭔가요?

텔레그램 그룹은 200,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각각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징 세계에서 돋보이는 몇가지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통합 내역
메시지 작성 후 수정되거나 삭제를 모두에게 반영됩니다.

플랫폼간 가용성
언제나, 어떤 모바일 혹은 데스크톱 기기에서도 메시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시 검색
수백만건이더라도, 원하는 메시지 검색. 보낸 사람으로 필터를 하여 용이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 멘션, 해시태그
그룹 규모에 관계없이 대화를 쉽게 추적하고 효율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알림
사람들이 나를 멘션하거나 메시지에 답변 할 때만 알림을 받도록 그룹을 음소거합니다.

메시지 고정
대화 화면 상단에 표시 할 메시지를 고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그룹의 일반 메시지를 음소거하더라도 알림을 받습니다.

관리 툴
메시지를 대량 삭제, 참여자 관리와 중요한 메시지를 고정 할 수 있는 관리자 임명. 세세하게 관리자 권한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룹 권한
모든 참여자가 특정 종류의 컨텐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기본 권한 설정. 또는 회원이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있는 동안 관리자가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 공유
최대 2.0GB 크기의 모든 유형의 파일을 보내고 받고 다른 장치에서 즉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개 그룹
공개 그룹, t.me/publictestgroup과 같이 그룹에 대한 짧은 링크를 만드세요. 누구나 그룹의 전체 채팅 기록을 보고 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봇을 통한 커스텀
봇 API 와 인라인 봇을 활용하여 특정 사용에 대한 커스텀 툴을 제작해보세요.

그룹과 채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텔레그램 **그룹**은 친구나 가족과 이것저것 공유하거나 소규모 팀에서 공동 작업하는데 적합합니다. 또한, 그룹은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최대 200,000명의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룹을 **공개**로 설정하고 **영구 기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참가자가 이전 메시지에 접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고 세분화 된 권한으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화면 상단에 고정하여 방금 가입 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은 많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채널에는 무제한의 구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에 게시하면, 본인이 아니라 메시지가 채널 이름과 사진으로 서명됩니다. 채널의 각 메시지에는 전달 된 사본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볼 때 업데이트되는 **보기 카운터**가 있습니다.

> 채널 FAQ에서 채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제377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5월7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번안의 건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속)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5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2.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72. 간사 선임의 건 ····· 6
o 간사(송희경) 인사 ····· 6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6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송옥주·김철민·설훈·정은혜·이상헌·이찬열·이후삼·김민기·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6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이종배·윤상직·성일종·장석춘·김규환·김도읍·김정재·정운천 의원 발의) ····· 7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성수·전현희·이상헌·김영호·윤후덕·이철희·김병기·신창현·심기준·백혜련·최재성·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7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종걸·이철희·김종민·어기구·박정·기동민·이용득·위성곤·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7
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소병훈·유승희·이종걸·장병완·김종민·박명재·임재훈·채이배·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7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강창일·최재성·신창현·천정배·송갑석·윤후덕·박정·윤준호·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7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7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태년·김정호·金成泰·변재일·이은권·윤일규·박완주·홍의락·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7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오세정·김삼화·최경환(국)·정인화·박준영·김광수·윤영일·이용주·지상욱·송기석 의원 발의)(계속) ····· 7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용득·기동민·어기구·강창일·소병훈·박정·위성곤·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 7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현희·김민기·송옥주·이후삼·박광온·김철민·안호영·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7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후삼·김병기·신창현·오제세·박정·한정애·김경진·소병훈·고용진·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 7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1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
21.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7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2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신창현·기동민·김병관·맹성규·송기헌·김영진·안호영·김해영·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7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7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7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송갑석·송옥주·김철민·이찬열·김민기·임종성·이후삼·전현희·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77)(계속) ····· 7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상민·민홍철·맹성규·김민기·기동민·이후삼·김정호·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15)

(계속) ····· 7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이언주・윤상직・홍문종・김석기・이학재・김정재・이은권・민경욱・김명연・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남인순・한정애・서영교・임종성・이용득・허윤정・박경미・정은혜・제윤경・김상희・김병관・유승희・권미혁・표창원・김영주・김부겸・정춘숙 의원 발의) ····· 7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종민・신경민・이상민・이원욱・정재호・허윤정・김진표・김영주・송갑석・김병관・김영진 의원 발의) ··· 8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서영교・박홍근・기동민・김상희・강병원・박경미・제윤경・김종민・허윤정・김정우・손금주・윤준호・진선미 의원 발의) ····· 8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철민・정춘숙・김병관・김영진・김두관・한정애・허윤정・이훈・이인영・김병욱・홍의락・박경미 의원 발의) ····· 8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최운열・이수혁・이석현・김병욱・임종성・신경민・윤일규・박광온・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8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장정숙・김병욱・최재성・김경협・김진표・신창현・송기헌・심기준・심재권・김성수・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8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박명재・곽대훈・원유철・추경호・김성찬・정종섭・이진복・김영우・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8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김관영・김삼화・채이배・박지원・유의동・인재근・민병두・주승용・추혜선 의원 발의) ····· 8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3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변재일・조응천・이철희・박정・김정우・이원욱・신용현・고용진・김경진・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8
4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성찬・김세연・이종명・김재경・강석호・김정재・김무성・원유철・김중로・민경욱・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8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상민・민홍철・김민기・맹성규・기동민・이후삼・김정호・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8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332)(계속) ····· 8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4)(계속) ····· 8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유기준・윤상직・김승희・홍문표・민경욱・김정재・유민봉・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5) ····· 8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유민봉・민경욱・함진규・이종명・윤상현・강길부・김현아・홍문표・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99) ····· 8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전혜숙・이학영・박홍근・소병훈・김영호・안규백・김병욱・윤관석・김해영・이수혁 의원 발의) ····· 8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정갑윤・원유철・김성찬・정병국・최연혜・성일종・이종구・김용태・이찬열・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58) ····· 8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인재근・김현권・유의동・채이배・김관영・김도읍・유승희・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97) ····· 8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철민・정춘숙・김병관・김영진・

김두관・한정애・이훈・이인영・박선숙・김병욱・홍의락・박경미 의원 발의) ····· 8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원유철・송옥주・김광수・주광덕・장병완・김중로・김종회・유동수・윤종필・조경태・박덕흠・이규희・김삼화・장정숙・고용진・이찬열・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8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김순례・윤상직・정유섭・곽대훈・이은권・정종섭・강길부・이채익・이은재・이종배 의원 발의) ····· 8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현희・김민기・조승래・권미혁・김철민・안호영・조정식・신창현・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 9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정병국・이찬열・정갑윤・박맹우・원유철・조훈현・임이자・김성찬・이은권・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0)(계속) ····· 9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김관영・인재근・김삼화・채이배・심상정・김종회・윤관석・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80) ····· 9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57.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이원욱・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장병완・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 의원 발의) ····· 9
5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9
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9
6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추혜선・송기헌・김철민・윤준호・서영교・김경협・박재호・김진표・김성수・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9
6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안호영・백재현・유승희・송기헌・최인호・이종걸・고용진・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9
6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9
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오제세・김종회・이동섭・권칠승・황주홍・하태경・이용호・채이배・정동영・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9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
6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백재현・이동섭・위성곤・김광수・권칠승・조경태・유성엽・윤후덕・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9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서삼석・조승래・신창현・김상희・김병기・송옥주・심재권・김영호・박찬대・윤후덕・이후삼・김철민・최재성・심기준・전현희・원혜영・강훈식・송기헌・강병원・박정・박광온・박범계・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9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어기구・김철민・홍익표・노웅래・제윤경・서삼석・김병기・김상희・윤일규・최재성・김영호・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9
6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정재・김규환・유재중・이종구・김도읍・원유철・박완수・심재철・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9
7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송갑석・김해영・윤관석・김진표・심기준・

강창일・임종성・김영진・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 9
7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7

(09시38분 개의)

○위원장 노웅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 될 듯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 상임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합심하여 협력하기도 하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곳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될 후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행한 의정활동이 평가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어 끝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상임위와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뛰어넘어 우리 국회 본연의 임무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더 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늦게나마 소위원회 위원 변동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보임되었고, 이원욱 간사께서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에 보임되었습니다. 또한 허윤정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 청원소위에 각각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표철수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최성호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상정에 앞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72. 간사 선임의 건

(09시40분)

○위원장 노웅래 의사일정 제7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한국당의 간사 선임을 국회법 제50조와 제57조에 따라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에서 추천한 송희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송희경) 인사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송희경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 20대 국회 과방위 4년간 임무를 수행을 다했고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많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 선임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다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책무를 다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자는 그런 유종의 미가 우리 과방위에도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고맙습니다.

박선숙 위원님은 괜찮으신 거지요?

○박선숙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고맙습니다.

---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송옥주・김철민・설훈・정은혜・이상헌・이찬열・이후삼・김민기・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이종배・윤상직・성일종・장석춘・김규환・김도읍・김정재・정운천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성수・전현희・이상헌・김영호・윤후덕・이철희・김병기・신창현・심기준・백혜련・최재성・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종걸・이철희・김종민・어기구・박정・기동민・이용득・위성곤・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소병훈・유승희・이종걸・장병완・김종민・박명재・임재훈・채이배・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강창일・최재성・신창현・천정배・송갑석・윤후덕・박정・윤준호・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태년・김정호・金成泰・변재일・이은권・윤일규・박완주・홍의락・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오세정・김삼화・최경환(국)・정인화・박준영・김광수・윤영일・이용주・지상욱・송기석 의원 발의)(계속)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용득・기동민・어기구・강창일・소병훈・박정・위성곤・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현희・김민기・송옥주・이후삼・박광온・김철민・안호영・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후삼・김병기・신창현・오제세・박정・한정애・김경진・소병훈・고용진・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신창현・기동민・김병관・맹성규・송기헌・김영진・안호영・김해영・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송갑석・송옥주・김철민・이찬열・김민기・임종성・이후삼・전현희・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77)(계속)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상민・민홍철・맹성규・김민기・기동민・이후삼・김정호・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15)(계속)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이언주・윤상직・홍문종・김석기・이학재・김정재・이은권・민경욱・김명연・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남인순・한정애・서영교・임종성・이용득・허윤정・박경미・정은혜・제윤경・김상희・김병관・유승희・권미혁・표창원・김영주・김부겸・정춘숙 의원 발의)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종민・신경민・이상민・이원욱・정재호・허윤정・김진표・김영주・송갑석・김병관・김영진 의원 발의)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서영교・박홍근・기동민・김상희・강병원・박경미・제윤경・김종민・허윤정・김정우・손금주・윤준호・진선미 의원 발의)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철민・정춘숙・김병관・김영진・김두관・한정애・허윤정・이훈・이인영・김병욱・홍의락・박경미 의원 발의)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최운열・이수혁・이석현・김병욱・임종성・신경민・윤일규・박광온・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장정숙・김병욱・최재성・김경협・김진표・신창현・송기헌・심기준・심재권・김성수・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박명재・곽대훈・원유철・추경호・김성찬・정종섭・이진복・김영우・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김관영・김삼화・채이배・박지원・유의동・인재근・민병두・주승용・추혜선 의원 발의)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변재일・조응천・이철희・박정・김정우・이원욱・신용현・고용진・김경진・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4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성찬・김세연・이종명・김재경・강석호・김정재・김무성・원유철・김중로・민경욱・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상민・민홍철・김민기・맹성규・기동민・이후삼・김정호・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332)(계속)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4)(계속)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유기준・윤상직・김승희・홍문표・민경욱・김정재・유민봉・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5)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유민봉・민경욱・함진규・이종명・윤상현・강길부・김현아・홍문표・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99)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전혜숙・이학영・박홍근・소병훈・김영호・안규백・김병욱・윤관석・김해영・이수혁 의원 발의)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정갑윤・원유철・김성찬・정병국・최연혜・성일종・이종구・김용태・이찬열・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58)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인재근・김현권・유의동・채이배・김관영・김도읍・유승희・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97)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철민・정춘숙・김병관・김영진・김두관・한정애・이훈・이인영・박선숙・김병욱・홍의락・박경미 의원 발의)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원유철・송옥주・김광수・주광덕・장병완・김중로・김종회・유동수・윤종필・조경태・박덕흠・이규희・김삼화・장정숙・고용진・이찬열・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김순례・윤상직・정유섭・곽대훈・이은권・정종섭・강길부・이채익・이은재・이종배 의원 발의)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현희・김민기・조승래・권미혁・김철민・안호영・조정식・신창현・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정병국・이찬열・정갑윤・박맹우・원유철・조훈현・임이자・김성찬・이은권・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0)(계속)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김관영・인재근・김삼화・채이배・심상정・김종회・윤관석・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80)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이원욱・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장병완・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 의원 발의)

5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6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추혜선・송기헌・김철민・윤준호・서영교・김경협・박재호・김진표・김성수・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6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안호영・백재현・유승희・송기헌・최인호・이종걸・고용진・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6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오제세・김종회・이동섭・권칠승・황주홍・하태경・이용호・채이배・정동영・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6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백재현・이동섭・위성곤・김광수・권칠승・조경태・유성엽・윤후덕・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서삼석・조승래・신창현・김상희・김병기・송옥주・심재권・김영호・박찬대・윤후덕・이후삼・김철민・최재성・심기준・전현희・원혜영・강훈식・송기헌・강병원・박정・박광온・박범계・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어기구・김철민・홍익표・노웅래・제윤경・서삼석・김병기・김상희・윤일규・최재성・김영호・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6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정재・김규환・유재중・이종구・김도읍・원유철・박완수・심재철・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7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송갑석・김해영・윤관석・김진표・심기준・강창일・임종성・김영진・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09시42분)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법률안 및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번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0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안심사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환부받은 5건의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6건의 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공통규범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수정안을 번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동 법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하고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최연혜 위원님께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중 감독에 따른 옥상옥 구조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윤상직 위원님께서는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단일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지 조문을 정리하여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연구실 안전정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상민 의원안은 법사위에서 환부된 것을 번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해제 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연혜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를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법률안의 허가·면허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환부받은 안건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안 제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문구를 조정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이원욱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성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金成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 6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이 중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 및 강병원 의원, 고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신용현 의원, 박선숙 의원, 조훈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 및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제도를 개선·다각화하고 둘째, 특정 전자서명수단의 불필요한 의무화를 방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셋째,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번안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양자정보통신기술로 규정하고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의 주체로 하고 관련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노웅래 의원, 박대출 의원, 백혜련 의원, 박광온 의원,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둘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지침 수립·권고, 침해사고 대응 방안 및 정보보호인증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넷째,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윤상직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방송통신시설 관리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둘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며 셋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수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둘째,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시 신고, 제조·수입·판매 시 인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넷째, 인가를 받지 않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노웅래 의원, 이원욱 의원, 박선숙 의원, 김성태 의원, 김경진 의원, 유민봉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넷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김성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두 분 소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한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32번 법안도 하고 있습니까, 32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웅래 32번……

○이상민 위원 법안 몇 번까지 다루는 겁니까?

○위원장 노웅래 32번……

지금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38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 좀, 과기부장관님께 확인을 구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보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도 포함을 시키고 또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손금주 위원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에 관한 우리 기존의 정의 규정하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위에서 논의를 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이미 기존의 정통망법 46조 또 시행령에서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법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서 재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게 되면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규제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킬 실익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 말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시행령 규정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관계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중복 규제의 우려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손금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존에 있는 법과 35번~38번의 새로 입법할 법과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이상민 위원님.

○이원욱 위원 관련된 것……

○위원장 노웅래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것 먼저 얘기하고 이상민 위원님이 할까요?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가 통과시킨 법에다가 아예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단……

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복 규제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규제되어 있다 그래서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제 통과시킨 내용에 '단, 정보통신망법의 제46조에 의한 내용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을 아예 법 안에 여기서 넣으면 그러한 중복 규제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거기 수정안에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고 수정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 따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원욱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가능합니다.

○이원욱 위원 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못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종, 일반 국민뿐만 아니고 기업,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규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다시 중복 규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굉장히 불만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규제를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고 정책 목표인데 이것이 자칫 중복 규제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과기부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복 규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손금주 위원님,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손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님, 제가 이원욱 간사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안 내용에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23조의3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거잖아요. 이 규정은 포섭 대상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 어느 범위까지를 지금 국가통신재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냐에 대한 규정인 것이고, 이원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기존의 정통망법상의 규제와 중복되는 현상을 방지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시행령을, 기존의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령,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통망법상의 시행령과의 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살펴보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장관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묻는데, 이러한 규제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데이터센터를 사업자에 포함시켜서 이런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적합성이 맞습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들은, 어쨌든 데이터 산업이 지금 클라우드 등등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규제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확신을……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최소한의 반드시 필요한 것 빼고는 규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야지요. 법치국가는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에 따라서 공익 목적에 합당한 규제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서, 그것도 가장 적합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들을 갖췄느냐 할 때 이 정책적 필요성 부분은 제가 그냥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연 적합한 수단인지는 검토를 했는지 법리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검토는 다 했습니다만 과도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와 유사한 규제가 다른 법, 정보통신망법 46조 등등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이상민 위원 비슷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틀리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

○이상민 위원 장관님,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정보통신망법 46조는 정보통신망 관련된 법안이고 지금 이것은 방송통신 관련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을 벗어난 분야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법치국가 원리에 그게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췄다고 검토를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그러한 것들을 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시행령 개정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법을 같이하셔서 해야지…… 이게 과도한 규제다, 중복 규제다 등등의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을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그런 시행령 검토는 됐습니다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의견까지 수렴해서 좀 더 완전한 시행령을 만들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차관님……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업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은 기본적으로……

○이상민 위원 아니, 우선 시행령부터, 그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 규정이 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자를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와 관련 대상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하다, 중복됐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염려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하여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마련을 이미 했어야지요. 어떻게 마련되어 있다고, 내용도 지금 없고……

그것은 과기정통부가 검토해서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저도 정책적으로 판단이 안 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지금 언론

에도 부각되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의 제기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위원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도 그렇습니다만 시행령을 개정할 때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을 할 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이런 우려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민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업체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다 담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령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장관님 답변 말씀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입법적 확신이 안 들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충분히……

○이상민 위원 아니, 시행령에 담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입법에 어떻게 담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시행령은 집행부 권한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희가 시행령에 담는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글쎄, 제가…… 아니, 저는 지금 장관님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이 법이 꼭 필요하고 법치주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시행령은 그래서 그런 등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업자 측의 과도한 규제다, 중복규제다,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을 심지어 실어 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실 저희가 검토를 다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숙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이고요. 지금 답변만으로는……

절차와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충할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 해 주시고요.

다음에 n번방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효성 있게 담보를 할 예정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음란물인 경우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디텍트(detect)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차단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디지털 성음란물·범죄물 등이 대체로 해외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통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사업자들과 역차별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마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즉시 삭제를 하거나 방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러니까 역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규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집행

이 될지 여부는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이, 지금 국내대리인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화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가 이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게 되면 이런 불법물의 유통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을 통해서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미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게 이른바 역외 규정인데요. 역외 규정이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법안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력을 확보하고 안 하고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대리인 제도라든가 구체적인 조사·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된다라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사법적 공조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 소관 법률은 아니겠지만 주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법적 공조도 이루어 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외 규정이 입법이 되면 그 규정은 결국은 효력이 미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기 위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국제적 공조와 관련된 입법적 또 제도적 보완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하시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OECD에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그런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안건은 34번이고요. 어저께 소위에서 논의됐던 안이, 지금 대안으로 정리된 내용이 조금 논의 내용과 틀리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당초 소위에서 논의한 안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광온 의원님의 안을 이원욱 의원님의 안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큰 취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박광온 의원님 안 중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원욱 의원님 안으로 그냥 옮겨가고 이관되는 것으로 돼 버려 가지고 이 자체를 지금 삭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안을 보시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페이지 개정안 부분의 제44조의9 2항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제64조의5 1항의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던 이유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그냥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30페이지 제64조의5제4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

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와 검사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과도한 월권이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원래 원안에 있던 '조사·검사' 대신에 '조사'가 빠지고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조사'입니다.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출입하여 검사하면 조사지요, 이것은. 현장 방문을 조사한다는 것인데 아예 이 부분은 애시당초 조사와 검사 항목을 빼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대체하기로 한 내용하고는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 원래의 취지대로 그대로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맞지요?

방통위 위원장님, 어제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표철수 예, 어제……

○박대출 위원 그런데 현장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무슨 검사를 합니까? 말장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표철수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노웅래 표철수 위원장님, 마이크 대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표철수 29쪽에 나와 있는 3항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일단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마는 4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것까지 미처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이것을 수정해 갖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구를 정리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앞에 제출요구권이 있는데요 제출을 안 하거나 부실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항은 그런 내용의 규정으로 생각되는데요.

○박대출 위원 그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나 월권 시비를 더…… 월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웅래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김성태 소위원장님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신가요?

○박대출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현장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웅래 잠깐만요, 김성태 소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한 34번 법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세요? 그러면 의견 듣고서 소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34번 법인가요?

○박선숙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예.

○박대출 위원 어저께 답변도 그렇게 했고,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정리하지요.

○박선숙 위원 아마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면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30쪽에 있는 4항,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방금 그 외의 내용들은 어제 지적된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항에 관한 것은 미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상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요구권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을 때 또 앞에 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또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명시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은 그냥 자료 요구권으로 수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말씀대로 4항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안을 하나 내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검사라는 게 표현상의 문제이지…… 현장에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웅래 박광온 위원님도 34번 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것을 방어,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확보하는 조항이 4번 조항이라고 보이는데요. 박대출 위원님께서는 현장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은 과도한 관여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을 완화하면서도 3번 조항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방통위에서 실무자끼리 논의를 해서 지금 당장 그 수단을 하나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64조의5 1항을 보시면 이게 불법촬영물의 처리와 관련한 보고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을 안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 내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후 과정들이 담보가 없으면 이 부분들은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자 전반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76조(과태료) 벌칙 조항도 있잖아요? 현행 법안 76조에 과태료 조항, 벌칙 조항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이런 불법촬영물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약소한 액수의 과태료를 무는 것들을 충분히 사업자들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투명성 보고서 문제, 4항 문제는 전제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한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 정합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한정한다는 게 행정권 남용이 항상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지요. 선의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남용 문제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만약 불법촬영물이 아닌 다른 부분에까지 행정력이 미쳤다면 그것은……

○박대출 위원 다른 대안을 가져오세요. 아니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34번 법 관련해서요?

예, 이원욱 간사님.

○이원욱 위원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중복돼 있는 것을, 원래 망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빼기로 한 것 맞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를 규율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만 5000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를 규율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되어 있고, 그 기술적·관리적 조치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23쪽 보면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을 대통령령에 담아서 배포하고 그 표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외하기로 해서 어저께 의결을 했는데 박대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복돼서 들어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수용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행정적인 갑질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해서 검사하도록……

지금 이 망법이 왜 논의가 됐느냐면 n번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n번방은 뭡니까? 카카오톡이 아니잖아요. 텔레그램이잖아요. 러시아 가서 검사할 겁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러시아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자칫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여기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역차별 문제는……

○박대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라든지 다른 조항을 가지고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담보하든지 해야지……

현장에 가 가지고 지금 한정된 검사만 한다고 방통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한정된 검사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현장 가서? 마구잡이로 그냥 자료 뒤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문호를 그냥 개방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것은 잠그고 빗장을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이렇게 기본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선숙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노웅래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방통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미제출 시나 허위자료 제출 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체계가, 어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박대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해서—조사 검사권에 대해서 자료 요구권으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의결을 했던 이유하고도 연관되는데요.

그 4항 앞의 선행 조항인 3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성 보고서는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4항이.

그래서 저는 이 4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자료 요구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4항은 삭제하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웅래 손금주 위원님, 이 34번 법과……

○손금주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손금주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 노웅래 예? 의견……

○金成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걸 내가 좀 말씀드리는……

○위원장 노웅래 그렇지요. 최종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金成泰 위원 손금주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노웅래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손금주 위원 이 규정과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가 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의무이행 방안으로서 이런 사실 조사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3항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으로 충분하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상에 회계 정리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49조에? 거기 보면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 권한을 방통위에 주고 그리고 그 검증 권한을 행사할 때 사실상 사실조사의 형식이 되지만 사실 조사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사 권한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규정으로 완화해 가지고 지금 3항하고 4항을 바꿔 주면 양쪽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투명성 보고서 조항을 둠으로써 이미 그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선례를 반영하셔 가지고 좀 더 사실 조사와는 별도로 엄격하게……

그 규정을 보시면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4항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 “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49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사와 관련된 51조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법례를 한번 참조해 보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정리를 박대출 위원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소위원장이 하실래요?

○박대출 위원 제가 조금 하고요.

○위원장 노웅래 예.

○박대출 위원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이나 또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논의할 것이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실효적인 보완 방안이,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이 4항은 삭제를 한 상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우리 국회에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 사업자에 대하는 태도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임의규정으로 지금 자료제출 요구권을 뒀는데 방통위원회가 국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제대로 성실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갑질을 더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행태로 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안을 당장 내놓아라 하니까 지금 내놓지도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4항은 삭제를 하고 3항으로 요구권을 원칙적·선언적 의미에서 하나 넣어 놓고 또 거기다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완하는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오늘 이 논의가 너무 자꾸 반복되고 지금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막고 또 다른 논의로, 다른 안건을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어제 의결된 34항 법과 관련해서는 소위원장인 김성태 소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金成泰 위원 어제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제 논의됐던 내용에 충실한다면 4번 조항은 삭제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행령 차원이나 그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을 실효적으로 하는 부분은 집행 차원의 담보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법안의 어떤 체계나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역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어제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어제 소위의 취지도 그랬고, 오늘 또 그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취지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니까 소위원장님,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또……

○박대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노웅래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보완하는 걸로……

○박대출 위원 4항 삭제하고 아까 기술적·관리적 그것 삭제하고……

○金成泰 위원 기술적·관리적 그것은……

○박대출 위원 이원욱 간사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 노웅래 이원욱 간사님, 이 내용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해서 제2항 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지요?

○金成泰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또 그리고 64조의5제1항제4호도 삭제하는 걸로, 그리고 제4항의 사업장 출입 검사권도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봐도 됩니까?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종걸 위원 제가 잠깐만, 저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노웅래 의견, 이 같은……

○이종걸 위원 아까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이종걸 위원 지금 44조의9 불법촬영물에 관한 문제 이게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고 그중에서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번에 텔레그램의 경우에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조항이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처벌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도처에 계속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래 유보의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걸 다 무책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암만 해도 느낌이 좀 별로…… 이것에 반대되는 사업자나 또는 당사자가 위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또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44조의9에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런 것 말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수사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인데요. 그러나 이후에 불법행위가 발생, 불법촬영물이라든지 그것이 유통됐을 때 그에 대한 사후수사를 위한 기술적 조치라든지 위험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많은 위원님들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국외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5조의2 같은 경우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어 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해외에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서 1년 동안 추적 수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건 가능한데 그러나 그 이후에 밝히기 위한 기술적 조치 같은 경우는 국내 행위는 열어라 그러면 서버를 열면 열 수 있겠지만 국외 행위는 안 되는 거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마치 이번 텔레그램방에 이쪽 망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대하는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소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망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말씀하셨듯이 국내 사업을 하는 게 없잖아요. 국내 사업이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앱 마켓사업자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지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대용량 글로벌CP의 앱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망쪽에서도 우선 너무 완성도가 떨어져요.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도처에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다 시행령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령법이지 이게 무슨 법이에요? 모든 것이 시행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 그냥 이중 삼중으로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나중에 조항에 보면 처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벌로.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없는 시행령으로 또 처벌할 것처럼 폼만 잡아요. 그게 될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주 골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원칙적인 규정만 남겨서 우선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되 기본적인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되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국내 국외 차별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 수사할 때 보면 카톡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라면 모든 것 다 들어와 가지고 처벌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텔레그램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때 큰 위기를 겪었던 인터넷 해외 망명 그게 또 이루어지지요. 사업에 있어서도 부당한 그런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망법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요. 이것도……

이것 잠깐 해도 되겠지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내용인데 ‘앱 마켓사업자’라고 해서 규정해 놓고 몇 가지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난번에 현안보고나 국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22조의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내대리인의 지정)’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내대리인 지정을 못 하게 되는 경우 간주 규정까지 있어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것은 구체화된 규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과 지정이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22조 전 조에 보면 그전에도 다 글로벌CP에 대한 지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를.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그 신고처가 되어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안 받았지요, 차관님? 보니까 이전 차관 때부터 신고 규정이 있는데 여러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신고를 우선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신고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유도하거나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글로벌CP 중에서 국내에……

○이종걸 위원 페이스북은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지금 페이스북 빼고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가사업자로 신고는.

○이종걸 위원 신고를 하나하나 해 왔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이스북 빼고는 일단은 AWS코리아나 MS……

○이종걸 위원 유튜브나 그런 것 다 신고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신고를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면 신고 내용 중에 우리가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것 중에 국내대리인으로서 간주하거나 또는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여기에 현재 주소지가 있고 그 주소지에 대한 법적인 효과로서 국내대리인적 지위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위원님,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계열을 한다고 그러면 AWS 본사랑 계약을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주체는 미국에 있는 본사하고 우리나라의 이용자 기업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법인이 어느 정도까지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걸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몇 달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이종걸 위원 그런데 신고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매출액 같은 것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부가사업자……

○이종걸 위원 신고가 뭐야? 내 주소지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매출액 같은,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부가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하니까 아마 매출액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이 뭔지.

○이종걸 위원 이제 더 이상 내용 확인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법 규정에 엄연히 있는데도 그동안 그런 신고 조항을 이용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유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수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 글로벌CP에 대해서 그냥 속수무책이었단 말이지요.

그래 놓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공정거래법의 영역이지 정보통신사업법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야 여기 법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하고 대리인 지정을 제대로……

사업자들이 다 여기에 에이전트나 조그만 사무소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이종걸 위원 그리고 군데군데 서버들도 있잖아요. 사용량,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 서버들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영업소로 볼 것이냐 국내 대리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규정이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제

가 볼 때는 이제 처음 시작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 정도이지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 용량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 의지 정도이지 이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매출 이상의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앱 사업자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웅래 이종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종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인터넷 서비스랑 인터넷 공공 정보의 유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수준의 이상'만이면 일정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이종걸 위원 그런 것들을 임의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 발걸음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두 다 그냥 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 도처에 맨 규정이 거의 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나중에 104조 때 보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심지어는 형사처벌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일단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구체적인 원칙 규정만 넣고 다음 대 국회에서 더 차분히 논의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학계에서도 보면 인터넷의 기본적인 원 취지에 비추어서 망 사업자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법적인, 법 외적인 권리를 이제 누리지 못하니까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이름 되어 있는 글로벌 CP들한테 돌리면서 오히려 과도한 의무 면제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역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법안을 심도 깊게 숙의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시간이 지난 2년 동안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고요. 부족하나마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숙제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 어제 제2소위가 5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행령으로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고서는 너무 과잉 입법으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율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위임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담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구성에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장님과 이원욱 간사님을 포함해서 여야가 어제 어렵사리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논의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좀 정리를 할까요?

○박성중 위원 (손을 듦)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박성중 위원님 하고요.

○박성중 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될 여지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위원님.

○박성중 위원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대안)을 한번 보시면, 44조의9를 한번 봐 주십시오.

44조의9 관련해서, 어제도 1항 관련해서 매출액 관련해서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항, 2항 죽 나와 있지요? 44조의9, 대안 법률, 신설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박성중 위원 보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박성중 위원 44조의9 1항 관련해서 보면 매출액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오늘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구난방 하지는 않겠습니다.

2항 한번 보시지요.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 가지고 1호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사전적인 검열, 사전적 조치, 사전적 삭제, 검열 논란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또 2호에 보시면 '기술적·관리적 조치'라고 앞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 이것을 혹시 시행령에서……

○金成泰 위원 삭제하기로 했어요.

○박성중 위원 삭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마 방통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게 사전적 삭제라든지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열하는 논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인터넷상으로 불법물이 유통이 되면 그 부분들을 신고,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 수단에 의해서 탐지할 수 있으면 빨리 탐지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검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불법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나서 통신위원장의 이야기는 듣고 싶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도 같은 의견이고 불법 촬영물은 삭제나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관은 아마 방통위 위원장님이셔서……

○박성중 위원 장관도 답변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괜찮겠지만 사전적 검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죽 해 가지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부가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박성중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성중 위원 망 관리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보통 인터넷서비스사업자라고 그래서 KT, SKT, LG유플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박성중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성중 위원 그렇다면 서비스 안정 수단은 망 관리가 하는 본연의 업무인데 이렇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래 놓으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치 이것을 하는 형태가 되는,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계셨었는데 더불어서 또 콘텐츠

서버를 통해서 콘텐츠 서버를 관리하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CP들에게도 일응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작년에 페북의 접속 경로 변경을 통해서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불이익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CP에 대해서 특히 글로벌CP들에 대해서도 일응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어제 법안소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중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망을 사용하는 사람은 망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의 망을 이용해서. 그런데 안정성까지 확보하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망 관리하는 사람은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망을 사용하는 사람한테까지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쾌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조의8 국내대리인 관련해서 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성중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법인,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를 들면 AWS코리아 같은 경우에 국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박성중 위원 그렇게 상세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회사 이름만 딱딱 대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AWS는 국내에 부가사업자로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

○박성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글코리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주소가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구글코리아는 주소가 있지만 구글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구글은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구글코리아가 구글의 주소가 있는 회사가 아니지요? 전혀 다른 회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성중 위원 유튜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유튜브도 주소 자체는 한국에는 있지 않습니다.

○박성중 위원 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일부 한국에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물어……

넷플릭스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넷플릭스도 국내에 사업자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아마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아마존도 아마존코리아는 되어 있지만 아마존 본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다 아는 사람끼리 자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관리하는, 그냥 서비스 구글에 있는 일부의 그것만 맡아 가지고 하는 다른 회사이지 같은 그게 아닙니다. 국내에 서버나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성중 위원 페이스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이렇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는 이유가 국내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국내대리인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FTA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의무 세계 각국이, 영국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에 방금 이야기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주소·영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두 가지만—유럽 하나, 동양 하나—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인 세계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제는 전체 세계가 움직이니까 그 나라들도 어느 한 나라에 맨날 다 두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FTA 규정이라든지 WTO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법에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넣는 것은 충돌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계적인 것다 검토해서 규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실 이게 역차별 문제 이런 것 해소하는 차원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박성중 위원 논의가 나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같이 협조해서 국제적 공조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이제 정리를 할까요?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정리가 아니라 추가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추가로?

예,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저도 소위에 참여를 안 해서 뒤늦게 일부 확인을 했는데요.

장관님, 37번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당초 어제 소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

○이상민 위원 누가 소위 참여……

2차관이 참여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참석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초 예정에 37번 법안은 없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현장에서 그전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넣은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이상민 위원 법안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나요?

차관한테 답변을 구할 성질은 아닌데, 이게 예고되고 그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예측 불가하게 그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특정 법안을, 더구나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반발도 예상되고 또 여러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소위 위원 몇 명이 동의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법안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정부는 그에 대해서 했으면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죄송합니다.

○이상민 위원 법안이 느닷없이 들어왔으면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됐으면 답변 준비를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이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다든지……

느닷없이 소위 과정에 끼워 넣기 해 가지고, 지금 소위 위원님들 몇 분한테 내가 확인했더니 서면도 확인 안 하고 구술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게 정부 방침과 역행하는지, 반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어제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상민 위원 정부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정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부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이상민 위원 정부가 지금 데이터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선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 건지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그거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들어 보면서 설득 과정을 하면서 공감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만약에 과잉 규제다라고 했을 때 반발하고 그 원망은 다 정부가 듣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 데이터 산업 육성한다고 그렇게 했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상민 위원 최소한의 규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시행령을 나중에 준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까 논란이 있었던 그 중복 규제 문제는 사업자……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련한다는 시행령이 뭐냐고요,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담당 국장인가 담당 과장 얘기로는 추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왜 그걸 추후에 말을 합니까? 심의 과정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법률적으로 규제를,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고……

○위원장 노웅래 이상민 위원님, 이제 다 지적하신 건가요?

○이상민 위원 이게 입법이 말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어떠해도 방식과 절차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 해서 소위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노웅래 그거를 김성태 소위원장님, 상정은 안 됐는데 내용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金成泰 위원 논의 과정에 기존에 박선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이 있었고 또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숙 위원님, 설명을 하시지요.

○박선숙 위원 절차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심사 과정에서 일부 법안들이 병합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정되는 의제에 병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합 심사 요청을 드렸고 소위에서 병합 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 내용에서 특히 정부가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박선숙 의원의 법안은 하여간 내용상으로는 일부 반영이 된 거지요, 우리 대안 법안에?

그렇게,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상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충실치가 않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과잉 규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시행령을 추후 마련해서 준비해 오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입법적 확신이 안 드니 이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어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배부되고 직원들은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올라온 안건보다 더 미리 제출했던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병합 심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왜 한꺼번에 올려서 병합 심의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런 의견 제시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장하고 우리 간사하고 양자 간에 합의해서 현장에서 그러면 병합 심의하자 해 가지고 법안을 올린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법안 심사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법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정보시스템임에는 분명하지만 방송통신시설이냐, 방송정보통신시설은 분명히 방송정보통신시설인데,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규제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방송통신시설에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소위 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같은 데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데이터센터에 관한 문제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데이터센터 자체의 안정성, 재난으로부터의 안정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안정되지 않다고, 데이터센터가 백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데이터센터가 물리적 보안이 취약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또 재난으로부터의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어제 소위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것이,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지금 단순히, 네이버 데이터센터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걸 네이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하는데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쓰고 있고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의 공공부문 데이터까지도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의 데이터센터라든지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에 공공정보까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글이나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구글이나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가 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통신시설로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시설의 일부로 관리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박선숙 의원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내용이 반영된 것 관련해서 이상민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반영해서 내용은 반영하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보세요. 저는 통과에 반대의견입니다.

○변재일 위원 정부 입장을 들어서, 정부 입장……

타법에 의해서 규제받을 수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타법에서……

이거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있고 방송통신 재난 이 법이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단순히 사전에 방송통신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을……

○위원장 노웅래 마이크 대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방송통신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반시설 보호법에는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체계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방송통신시설로 봐서 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38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대안) 관련해서는 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위의 의결을 존중하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촘촘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중복 규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울러서 해외사업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이상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만약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통과를 원하시면 제가 소수의견 달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든지 다른 의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노웅래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웅래 이상민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박선숙 의원님 법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내용이 포함된 거에 대한 문제 지적과 아울러서 이 법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실까요?

○이종걸 위원 급하지 않으면 다음 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상민 위원 이것 좀 심도 있게 하시지요. 갑자기 끼워 넣기 해서 후닥닥 해 가지고 소위에서……

○위원장 노웅래 아니, 끼워 넣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은……

○박선숙 위원 그걸 끼워 넣기라고 말씀하시면……

○이상민 위원 끼워 넣기 한 거지요.

○위원장 노웅래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내용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회의에서 의결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걸 존중한다 그러면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한 대로 시행령에서, 촘촘히 정교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해외사업자도 제대로 적용되도록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내사업자가 역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다면 이 법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이상민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여튼 일단 지금 표결 절차는 아니니까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그런 식으로, 정부쪽에서는 시행령을 촘촘히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위원장 노웅래 소위의 의결을 존중해서……

그런 입장인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위원장 노웅래 그렇게 되겠고요. 표결 여부는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4번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안) 이거는 44조의9에 있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관련해서 제2항 2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거는 삭제하는데 정부 측, 우리 소위에서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완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부 측?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기술적·관리적 조치' 삭제,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노웅래 그리고 64조의5 제1항 4호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 정부 쪽?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나머지 하나가 결국에는 아직 정부 측 의견과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게 64조의5 제4항의 사업장 출입 검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삭제를 의견 내신 것이지요? 그런 건가요?

○金成泰 위원 소위 결론이요.

○위원장 노웅래 예, 소위 결론이.

○金成泰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소위의 결론은 검사권을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지금 정부 측 입장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지요.

○金成泰 위원 위원장님, 어제 방통위를 대신해서 부위원장의 참석하에 이런 취지의 소위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웅래 정부 측 의견 다시 묻겠습니다.

64조의5 제4항의 사업장 출입 검사권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 의견으로는 존치가 타당하겠으나 아까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조사권을 두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면 조금 전 토론 과정에서 손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엄격한 요건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변재일 위원 대체안을 금방 마련할 수 있어?

○박대출 위원 그건 금방 안 되지요. 지금 엄격한 요건을 논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보류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노웅래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이 n번방 관련해서는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된 범위에서 통과시키고, 오늘도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도 손금주 위원이 애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면 한번 논의해서 추가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오늘 손금주 위원하고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개정안을 내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21대 국회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일단 64조의5 제4항 사업장 출입 검사권도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의견 주신 대로 그것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사업자도 촘촘히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보완하도록 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최연혜 위원 저 법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어제 저희 법안1소위에서 13항·14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는데요. 연구실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법의 대상이 아주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연구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연구실 운영의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우려를 우리가 또한 했습니다.

이 법의 다른 여러 가지 취지는 다 공감이 되는데 10조에 보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째 보면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둬라.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1000명 미만의 연구실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실의 93%고요, 100명 이하가 88%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5명, 10명, 20명 이런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기업 연구실 전체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우려를 어제 상당히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이 연구실에 있던 사람 하나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보니까 이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론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은 현장의 민간 연구소나 중소기업 연구소나 이런 데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어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가는 많은 연구소 운영에 큰 파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또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3항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것하고 이게 좀 다른 부분이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3항을 빼든지, 졸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3항을 빼야 되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하여튼 문제점이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원욱 법안1소위원장이 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노웅래 지금 이원욱 소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김성태 간사님이 잠깐……

○최연혜 위원 아니, 여기 오시네요.

○박대출 위원 좀 설명 듣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재정적 부

담을 갑자기 주면……

○최연혜 위원 예, 재정적 부담이 있고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 노웅래 13번·14번 법 어제 소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

김성태 간사님.

○金成泰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을 때 저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장관님 보고가 있었을 때.

그런데 최연혜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이 부분이 연구소를 보유한 기관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법 취지는 좋습니다만, 연구소의 안전이라는 목적성은 좋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모든 규모가 약한 연구소나 기업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원욱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노웅래 이원욱 간사님.

○이원욱 위원 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될 때 사실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출연연, 대형 회사들, 큰 대기업의 연구소들 이런 데들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100인 이하가 한 80% 되고 20인 이하가 한 95%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이런 안전관리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또 다른 규제로 비춰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외시키겠다라고 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실제 10페이지 이 법의 3조(적용범위)를 보면 단서 조항에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출연연이라든가 대형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성태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노웅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1차관입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보면 적용 제외 대상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연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10명 미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인이라거나 30인 아니면 중소·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상향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10명 이하로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더 필요하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10명 이하라는 게 그 숫자가 제외되는 게 많지가 않고, 그런 것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느냐 물었을 때 어제 답변이 대기업이랑 공공기관이나 출연연구원만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그 소규모 연구실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어제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요.

단순히 10명 이하를 제외한다고 해서 이 법이 당위성을 가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 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실의 특성이 예를 들면 특수한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걸 다루는 연구실인데, 연구소인데 그런 분야에는 이런 자격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안전관리사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50명이 되는 연구소라 하더라도. 그러면 화학물질도 아닌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사를 둬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한 요지가 뭐였냐면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각 분야에 대한 이런 안전관리사의 존재 실태,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제기했는데, 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분야의 어느 정도 일하는 사람을 아무나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사람과 경력을 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위원님, 혹시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희경 위원 저……

○위원장 노웅래 이것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송희경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 저도 아까부터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해야겠다 싶은데, 이게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숫자적인 측면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고 그냥…… 10명이라는 기준이 너무 작위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화학분자나 물질을 다루는 데서 폭발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분명히 필요한 법안인데 만약에 앉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실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든가, 전혀 물질을 다루지 않는 그런 연구실의 유형에 대해서의 구분이라든가, 그런 연구실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기준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미만 기준은 굉장히 세밀히 나누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범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너무 규제성이에요.

정부에서 한번 대답 좀 주시지요. 두 가지입니다. 인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의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위원님들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이라고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행령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뿐만이 아니고 연구실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화학물질을 다루는 데인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연구실인지—그것을 시행령에 담아서 문제가 되는 데는 이것을 꼭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한다면 11명이 있는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예로 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1명의 안전관리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두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위원장 노웅래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보면 지금 이 법의 도입 취지에는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점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라든지 해당 연구소들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그것을 토대로 시행령을 마련하면 오늘 논의하는 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 측도 동의하시고 하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이원욱 소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어요?

○이원욱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박대출 위원님이 15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정·보완한 의견을 냈는데 정부 쪽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실 환경 조사를 다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최연혜 위원님, 그러면 반영이 된 것으로……

○최연혜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음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각 분야의 연구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영향 조사를 하지 않고 이 법안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조의 3항을 보면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지금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위원님 좀 죄송한데 말씀드리면요 이게 개정법이고요 제정법이 아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조의 3항은 종전 법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마 비교표가 없다 보니까 추가된 것으로 혼용이 될 수 있는데 3항은 종전에 있던 규정입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합니다.

제 우려가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실태 조사를……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전 대에도 국회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돼 가지고 산업체나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도 기술사 경력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시행령을 준비해서 함께 이것을 꼼꼼히 면밀히 따져서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그런데 연구실 안전환경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데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춰서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소위에서 의결을 한 거지요?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지금 정부쪽에서는 시행령으로 보완해서 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노웅래 예,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 지금 10조의 모든 항목이 다 제정법에 있고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다 제정법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10조에 3항……

○송희경 위원 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아까 말씀하신 연구실안전관리자는……

○송희경 위원 1항, 2항은 다 있고 3항도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3항이 종전에 있던 것으로 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노웅래 3항의 일부만 새로 내용이 들어간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이 부분만 들어간 것 같은데?

○송희경 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정법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그대로 동일하게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소규모 연구실은 그 연구실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고 안전관리사를 두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명 미만은 빼고요.

○송희경 위원 지금 현재 제정법으로 운영되는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위원장 노웅래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도 이 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그 법으로도 충분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현장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막 검토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뭐 이렇게 일부라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제정법으로 해서……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의 대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취지가, 신용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종전 법이 워낙 미흡해서 거의 전면 개정에 해당이 될 정도로 체제를 많이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훨씬 사람 중심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에서 우려 사항을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른 위원님들, 지금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문제와 관련한 거고 이 법 취지에는 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보완해서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법을 더 보강을 하는 거지요,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손금주 위원입니다.

이 개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일단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최연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수요조사 같은 것 국회에 보고의무를 명확하게……

○이원욱 위원 보고,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위원장 노웅래 예,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것 등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실태조사를 다 해서 보완 사항을 정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최연혜 위원님의 우려하는 부분,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시행령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들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번안의 건은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안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번안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최연혜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은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안건으로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번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번안 의결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그리고 제17항 노웅래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은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안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로부터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을 번안 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은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안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로부터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을 번안 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은 법사위로부터 환부받은 안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법안소위로부터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번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제33항 노웅래 의원, 박대출 의원, 백혜련 의원, 박광온 의원,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바를 토대로 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여 합의한 대로 수정하여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및 71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의견 물어보셔 가지고 제 의견만 있으면 소수의견 다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3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의 이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고 이 법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손금주 위원입니다.

소수의견 첨부하실 때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절차적인 부분이야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에 대한 중복 규제와 관련된 우려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다실 때 그동안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 왔던 내용이라서 저도 같이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웅래 소수의견을 추가할 때 이상민 위원님 의견과 손금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다 소수의견으로 해서 같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제37항 노웅래 의원, 윤상직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김성수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제55항 정부가 제출하고 이은권 의원, 변재일 의원, 김성태 의원, 박선숙 의원, 이원욱 의원, 김경진 의원, 유민봉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법안소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실무 작업과 정부를 의견을 참조하여 제정안의 형식으로 여러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폐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폐기 대상 법률안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법안을 폐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구수정 및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2분)

○위원장 노웅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의결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발주 관행 해결, 인력양성 기반 조성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마련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들께 큰 불편으로 다가온 공인인증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들은 관련 산업계와 연구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김성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반 의무 등을 부과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욱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미래 먹거리 법안 그리고 혁신성장 법안 그리고 행정규제를 혁파하는 법안,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이런 법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함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관, 언론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는 더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金成泰	김경진	노웅래	박광온
박대출	박선숙	박성중	변재일
손금주	송희경	신용현	윤상직
이상민	이원욱	이종걸	최연혜
허윤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한성구
입법심의관	정홍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제1차관	정병선
제2차관	장석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수
기획조정실장	전성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규택
정책기획관	류광준
비상안전기획관	김재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고서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이창윤
미래인재정책국장	강상욱
정보통신정책관	박윤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강도현
소프트웨어정책관	송경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허성욱
통신정책관	홍진배
전파정책국장	오용수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성봉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최원호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석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종석
예금사업단장	신대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부위원장	표철수
사무처장	최성호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반상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김재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사무처장	장보현
기획조정관	김성수
안전정책국장	손명선

'N번방' 못 잡는 'N번방 방지법' 후폭풍… "사찰" "역차별" 논란

입력 2021-12-12 15:00 수정 2021.12.12 1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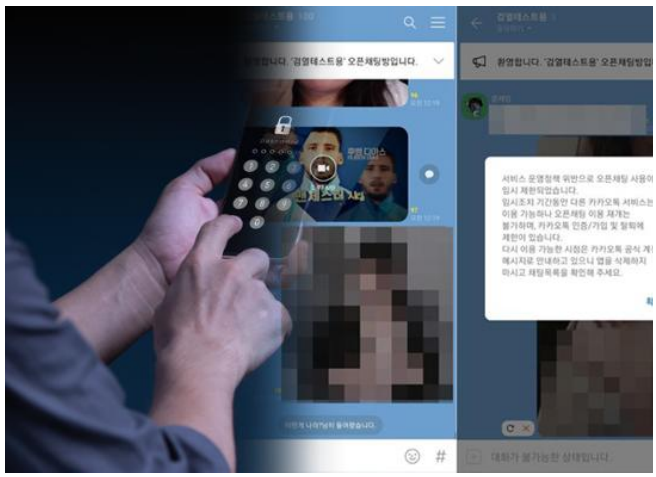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불법촬영물 필터링 수위를 테스트하는 그룹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게티이미지뱅크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인터넷 상 갑론을박도 뜨겁다. 이 조치는 지난해 불법 동영상 공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태의 사전 차단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N번방 사태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은 정작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창작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게 사실상 어렵단 점에서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 DB와 대조해 불법물 필터링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는 10일부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부과된 조치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등을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 90개 이상 사업자가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에 의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된 정보를 수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는 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정부가 확보한 불법촬영물 정보(DB)와 대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식이다.

N번방 문제 됐던 창작물은 못 걸러... 텔레그램도 제외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용자가 주고받는 영상을 직접 분석해 불법 촬영물인지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신고되거나 자체 분류한 불법 파일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는 형태인 만큼, N번방 때처럼 새로 창작된 영상은 찾아내기 쉽지 않아서다.

조치의 대상 범위도 논란이다. 정부에선 '사적 검열'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치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고 유통된 정보'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정작 N번방 사건 때 불법촬영물이 퍼졌던 텔레그램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텔레그램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SNS다.

국내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의 경우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사생활 보호란 가치가 충돌하면서 규제의 취지나 실효성 모두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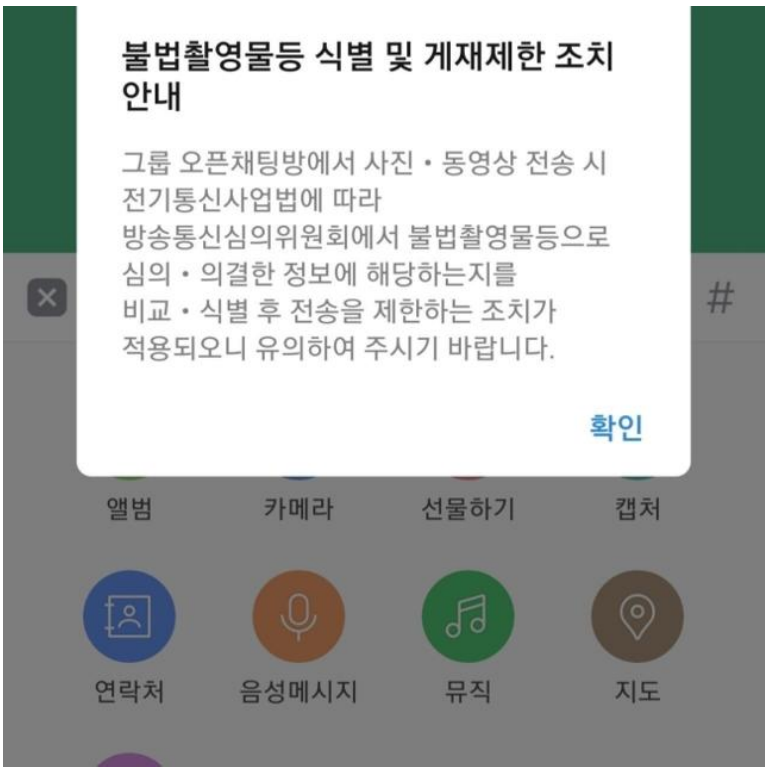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카카오톡 캡처

사적 규제 아니라지만..."독재국가 만드냐"는 불만 쏟아져

이번 조치를 사적 검열로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필터링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선 "대선을 앞두고 카톡을 검열하기 위한 시도"라든가 "정부가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것은 할 수도 없

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카카오톡 채팅방 내부 게시 내용은 우리조차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들도 부담이 크다. 정부가 제작한 시스템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동영상 검열 과정에선 수초~수십 초가 소요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불명확한 검열 기준 탓에 정상적인 촬영물을 불법으로 오판하는 사례도 나왔다. 특히 해당 업체에선 필터링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넷플릭스법(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짐이다.

또 이번 조치가 국내 서비스 중심으로 적용되다 보니, 검열을 우려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나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N번방처럼 불법촬영물을 창작하는 사례는 경찰의 잠입수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해외법인 텔레그램은 빠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13 00: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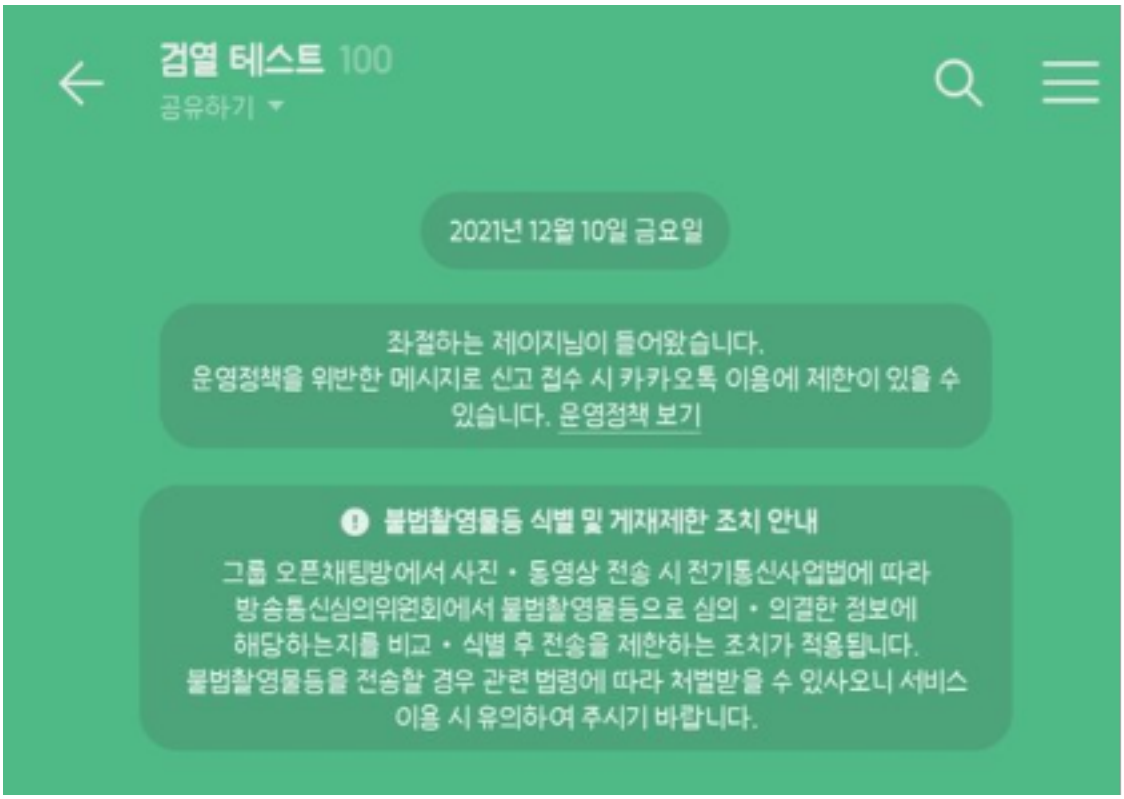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식별·게재제한 조치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다. [카카오톡 캡처]

10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첫 시행됐다. 이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는 "검열 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룹 채팅방이 수십 개 개설됐다. 오픈 채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아닌 임의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채팅방이다.

실제 100여 명이 모여있는 한 '검열 테스트' 채팅방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사진·영상이 검열되는지 테스트하겠다"며 시간당 수백장의 사진 파일을 공유했다. 불법 촬영물이

아니어서 대부분 필터링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부 사용자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리면 검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뽐뿌·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관련 기술은 그룹 오픈 채팅방에만 적용되고, 일대일 오픈 채팅방이나 일반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트 신고 시스템 마련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검색 제재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전 고지 등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민간 기술을 서버에 상시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려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이 허용된다.

여기에 쓰이는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8월 개발한 '불법 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이다.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한 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DB'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한다.

문제는 개발된 지 4개월도 안 돼 급하게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게시글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이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해서 접속 장애나 품질 저하가 나타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에 적발·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조해 필터링하는 방식이어서 새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n번방에서는 기존에 없던 기이한 형태의 성착취물이 공유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 이름만 'n번방 방지법'이지 사실상 유사한 범죄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정치 >
국회·정당

텔레그램 못잡고, 국내업체만 잡는 n번방法

[본회의 가결,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

불법 음란물 삭제 안하면 처벌, 해외 업체는 강제할 방법 없어
방통위 "공개된 인터넷 글에 한정" 사적 대화방까지 감시 우려 목소리

이슬비 기자
입력 2020.05.21 03:00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된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으로 나온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텔레그램은 예외인 'n번방 방지법'이 무슨 의미냐"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근할 수 없게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초선 의원 당선자들 한자리에 -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대상 의정연찬회 참석 후 본청 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미향, 양정숙 당선자는 이날 연찬회에 불참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도 규제 대상에는 포함된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역외(域外)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외 사업자에게도 불법 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 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본사가 거부한다면 국내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IT 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본사 위치도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이 유통될 경우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내 '삭제 협조 요청' '음란물 차단 요청'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텔레그램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IT 업계에선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 메신저를 쓰는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제정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일대일 대화나 비공개 대화는 해당되지 않고, 공개된 인터넷 글에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도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에도 사용자의 비밀 대화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후 시행령 단계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처럼 개인 간 사적 대화방까지 간접적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 자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사전 검열' 현실화에..."n번방 방지법 개정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이용자들 '사전 검열'에 반발...국민청원 하루만에 3500명

野 "헌법 침해 소지 있어...당 차원 재개정 추진해나갈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12-10 17:10 송고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파일을 오픈채팅방에 올릴 때마다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10일 시행된 불법촬영물 필터링 때문이다. © 뉴스1 김정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내 메신저·커뮤니티 등에서 본격 시행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됐다.

그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불법촬영물 필터링이 시행면서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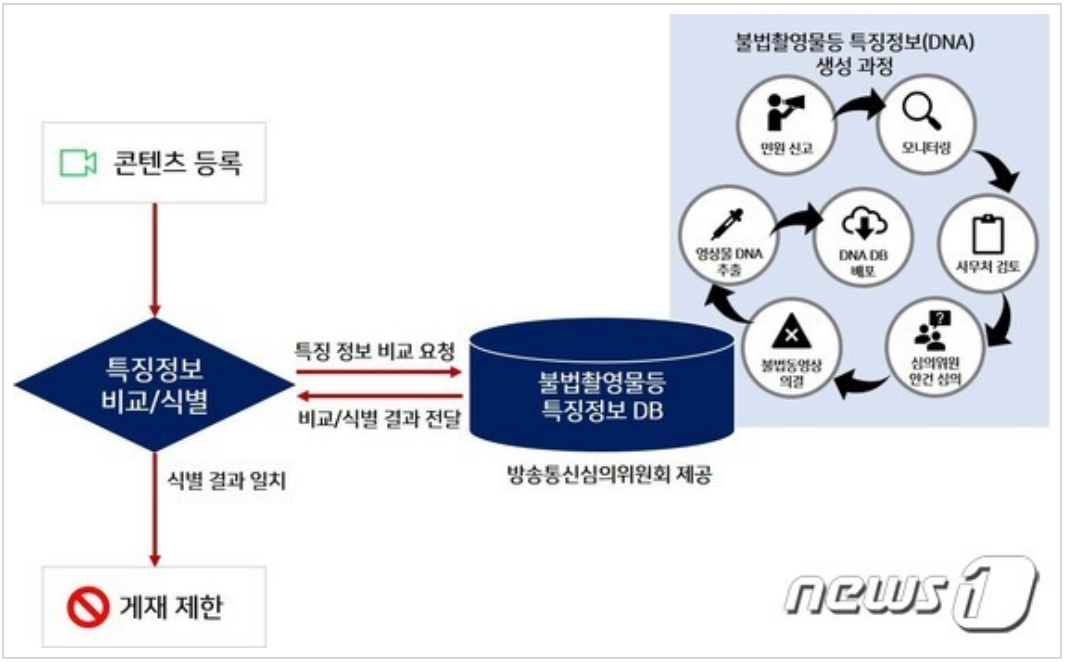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 © 뉴스1

◇카톡 오픈채팅방 보니...업로드 동영상 모두 '사전 검토' 후 업로드

이번 필터링 기술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에만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

실제 카카오톡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사진·동영상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는 경고가 가장 먼저 떴다.

이후 동영상 파일을 오픈채팅방에 올릴 때마다 필터링 기능이 작동했다. 동영상이 업로드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문제가 없는 동영상이라는 판단이 끝난 뒤에야 채팅방에 업로드됐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다. 루리웹, 에프엠코리아 등 대형 커뮤니티들 역시 관련 공지를 띄우고 "업로드되는 파일 모두를 검사하고 필터에 걸릴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 만인 10일 현재 3561명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1

◇"n번방 터진 텔레그램은 못막는 n번방방지법 개정해야" 국민청원까지

이같은 '사전 차단'이 현실화되자 국내 메신저 및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 만인 10일 현재 35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건 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으로 규제받아야할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해외 SNS인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n번방 방지법은 국내 SNS만을 단속하므로 이 법은 정작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황금방패 프로젝트(Golden shield project)를 통해 현재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운영하며 자국내에서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차단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이용자들 "사전 검열, 어디까지 갈지 몰라...中 만리방화벽도 그렇게 변했다"

이용자들은 이번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반발 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지금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자료만 필터링에 들어가 있다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를 붙여 어떤 내용을 더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라며 "중국의 황금방패·만리방화벽도 국가안전을 내세웠지만 결국 공산당 마음에 안드는 건 모두 차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황금방패 프로젝트(Golden shield project)를 통해 현재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운영하며 자국내에서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차단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는 해외 포털이나 메신저 서비스는 차단돼 중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이용자는 "불법촬영물 DB도 지난 2019년 '웹하드'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는데 n번방이라는 핑계가 생기자 대번에 메신저와 커뮤니티까지 넓혀버렸다"며 "막상 텔레그램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내 기업만 규제에 나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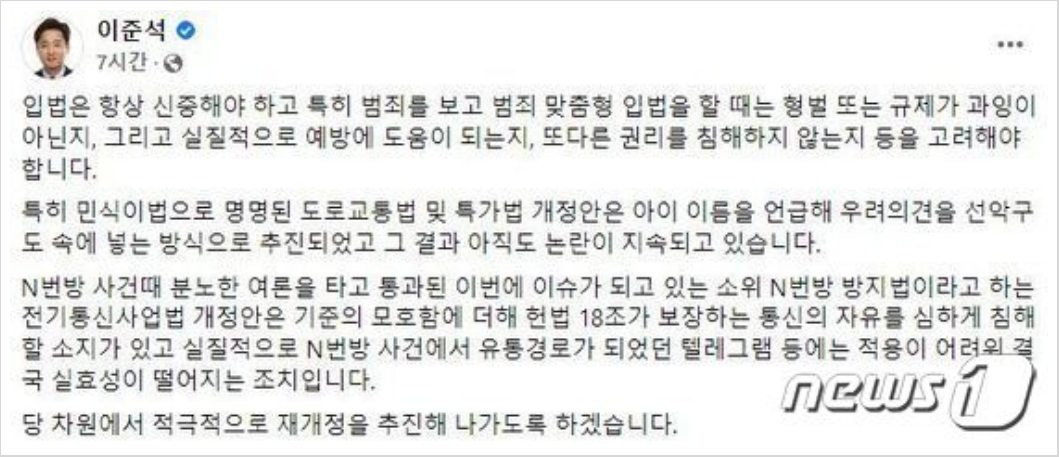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野 "헌법 침해 소지...제도 보완 입법 방안 마련"

이날 시행된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도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관계 기관은 영상 정보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AI 기술을 통해 일부 특정값만 추출하기 때문에 사생활 감시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규정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